

전자상거래 사업자, 소비자 주민번호 보존 못한다

■ 공정위, 소비자 분야 법령 정비

상조업체 초과 법정예치금 반환

다단계업자 판매원 등록증 발급

앞으로는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업무 착오로 법정예치금(선수금의 50%) 이상을 예치한 경우 초과분에 한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단계업자는 판매원이 동의한다면 판매원 등록증과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이 기재된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분야 제도 중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해 15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상황이 변해 현실과 맞지 않는 소비자 분야 제도 ▲새로운 기술수단을 활용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범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했다. 공정위는 이런 소비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 개정안 10개와 시행령(2개) 시행규칙(3개)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선불식

■ 소비자분야 15개 개선과제 법령

법령	번호	내용	개정 대상
전상법	1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존근거 삭제	법 제6조2항
	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 민원인 서류제출 부담 경감	시행규칙 별지 4호
방판법	3	다단계판매업자의 수첩발급의 개선	법 제15조5항
	4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 등록증 발급의무 개선	법 제15조3항
	5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통지방식의 확대	시행령 제28조
	6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원의 청약철회 방식 확대	법 제17조2항
	7	방문판매업상 사업자의 변경신고 사유 축소	법 제5조2항, 13조 2항
할부거래법	8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변경신고 사유 축소	법 제18조3항
	9	선불식할부거래업 변경신고시 민원인 서류제출 부담 경감	시행규칙 별지3호
	10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사유 확대	시행규칙 제11조2항
	11	할부거래법상 과태료 감경근거 마련 개선	시행령 별표
	12	할부계약 해제의 이행최고 의사표시 방식 확대	법 제11조1항, 26조
생협법	13	생협 전국연합회 설립요건 완화	법 제72조
	14	조합원 제명에 대한 생협의 자율성 확대	법 제19조1항
	15	회원 탈퇴에 대한 연합회 자율성 확대	법 제58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지급할 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선수금의 50%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한편 예치된 금액은 소비자와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반환받을 수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사업자는 업무 착오로 법정예치금보다 많은 금액

을 예치해도 법적예치금 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예치금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은 판매원이 동의한다면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또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한 다단

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간 계약 철회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서면·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던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변경 통지도 판매원이 동의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문판매업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 사업자의 경영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는 수고도 덜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표자 주소 등 영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사업자가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범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를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의무위반자가 수급할 수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위반 행위의 정도·동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근 입법 추세”라며 “경미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생협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자제품 기대수명은

※출처:미국가전협회



평판 TV 7.4년



디지털 카메라 6.5년



데스크톱 컴퓨터 5.9년



스마트폰 4.6년

TV 7.4년 ‘가장 길고’ 스마트폰 4.6년 ‘단명’

전자제품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은 TV가 가장 길고 스마트폰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미국가전협회(CEA)가 미국 성인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가전과 모바일을 포함한 전자제품의 기대수명에 대해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판 TV(flat panel TV)가 7.4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디지털카메라 6.5년, DVD 플레이어 6.0년, 데스크톱 컴퓨터 5.9년, 블루레이(Blu-ray) 플레이어 5.8년,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 5.7년, 노트북·넷북·랩톱 컴퓨터 5.5년, 태블릿 컴퓨터 5.1년 순이었다.

피쳐폰을 비롯해 스마트폰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는 4.7년이었고 스마트폰은 4.6년으로 모든 전자제품 중 가장 기대수명이 짧았다.

미국가전협회는 평균적으로 소비자들이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대략 5년 정도 사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는 가정에 두는 거치형 전자제품의 기대수명이 더 길고, 휴대하는 제품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미국가전협회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스마트폰의 기대수명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고장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최대한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는 신제품의 등장이나 통신사업자와의 계약 관계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이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콘서트·뮤지컬 티켓 환불 잘 안돼요”...공연 관람 피해 급증

■ 소비자원, ‘민생침해 경보’ 발령

올들어 46건 접수...출연자 교체 등 ‘계약불이행’ 최다

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해 티켓 환불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을을 맞이하여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1월~8월까지 공연관람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46건이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2건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불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

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7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연령별로는 ‘20대’ 16건(34.8%), ‘30대’ 14건(30.4%), ‘40대’ 7건(15.2%)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65.2%를 차지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28명(60.9%), 남성이 18명(39.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해 티켓 환불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전단지

● 현수막

● 상패

● 상패

● 전단지

● 각종 인쇄물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dtjs12@hanmail.net